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가단21546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룡

변 론 종 결 2022. 3. 8.

판 결 선 고 2022. 5. 10.

주 문

- 가. 피고와 D,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4,370,08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4,370,0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3/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D, E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1,688,92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1,688,9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 채권

- 1) D는 주식회사 F로부터 2017. 3. 15.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주식회사 F은 부산지방법원 2018가소551421호로 D를 상대로 그 원리금채권액인 '13,925,297원 및 그 중 13,154,185원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4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이행권고결정을 신청하였고, 그 이행권고결정은 2018. 6. 26. 확정되었다.
- 2) 원고는 2019. 10. 23. 주식회사 F로부터 D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받고, 그 무렵 D에게 양도통지가 마쳐졌다.
- 3)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2021. 4. 19. 기준 21,688,920원(원금 13,154,185원, 이자 8,534,735원)이 남아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약과 D의 재산 상태

- 1) G는 2020. 3. 3. 사망하였는데, 공동상속인으로 피고, D, E이 있고, 각 법정상속분은 1/3이다(이하 위 G를 '망인'이라 한다).
- 2) 망인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피고, D, E은 2020. 3. 3.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상속재산분할협약(이하 '이 사건 분할협약'이라 한다)을 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20. 3. 31. 위 부동산을 2억 2,200만 원에

주식회사 H에 매도하였다.

3) D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

4) 피고는 2020. 4. 6.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해지하고, 해지금액 72,646,029원을 주식회사 I에 상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에 대하여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여부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D가 자신의 상속분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D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속비용 등의 공제 : 합계 15,381,270원

가) 민법 제998조의2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상속에 관한 비용이 공제되어야 하는바 피고의 주장을 살펴본다.

나) 공제가 인정되는 항목

① 이 사건 부동산 매각을 위한 중개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5,565,200원 (을 제2호증) :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이다.

② 장례비용 9,816,070원 (을 제3호증, 응급실진료비 1,295,320원 + 사회복지법인 J 정산비용 2,056,150원 + 상조비용 2,830,000원 + 화장터이용료 180,000원 + 묘지조성비 3,454,600원)

다)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항목

① 장례비용 7,000,000원 : 피고 등 상속인들이 이를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② 상속채무 등 부채상환 : 소극재산 항목에서 판단할 부분에 해당한다.

2) D의 특별수익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018. 6. 15. K 주식회사에서 7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를 D가 사용하였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위 대출금 잔액 59,431,220원은 D에 대한 특별수익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② D가 망인을 통하여 L에게서 빌린 15,000,000원을 상속재산 매각대금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이 부분 역시 특별수익에 해당하며, ③ D가 피고에게서 빌린 10,000,000원 및 피고가 D를 위하여 대납하여 준 K 대출금 이자 1,400,000원 역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K 대출금 잔액 부분 : 59,431,220원

채무자가 피상속인인 망인의 생존 시에 망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소비한 경우 채무자가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가 망인으로부터 위 대출금 상당의 증여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2011. 8. 4. K

주식회사로부터 7,000만 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D가 위 대출원리금을 갚기로 약정하였고, 대출금 중 30,619,956원은 망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후 D에게 바로 이체되기도 하였던 사실, 망인은 2018. 6. 15. K 주식회사에 59,431,220원을 입금하여 위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D는 위 대출원리금 중 미변제 부분인 59,431,220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L에 대한 채무 부분 : 인정하지 아니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L이 D에게 2011. 10. 27. 2,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7. 1. 27. D가 500만 원을, 2020. 4. 29. 피고가 1,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L이 D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2,000만 원을 망인의 L에 대한 채무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 또는 대출원리금 대납부분 : 인정하지 않음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와 D 사이의 대여금 또는 구상금 채권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거나 특별수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D의 구체적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D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D의 구체적 상속분은 4,370,087원이 된다.

㉓ 망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적극재산 가액 : 220,000,000원

㉔ 망인의 상속개시 당시 소극재산 : 주택담보대출금 72,646,029원

㉕ 공제가 인정되는 상속비용 : 15,381,270원

㉖ 생전증여(특별수익)의 가액 : 59,431,220원

㉗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D의 상속분 가액 : 4,370,087원

$$= [(㉓ - ㉔ - ㉕ + ㉖) \times 1/3 - ㉗]$$

4) 소결론

따라서 D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인 4,370,087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가 인정되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 범위에서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

라. 원상회복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 말소되었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자 원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일부 취소를 구하는 범위는 2021. 4. 19. 기준 채권액인 21,688,920원이다. 이 사건 부동산 중에서 D가 이 사건 분할협의로 처분한 D의 구체적 상속분은 4,370,087원이다. D가 이 사건 분할협의로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3) 따라서 피고와 D, E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4,370,087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기로 하되, 일부 취소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가액배상을 명하기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370,08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세아

별지